

1. 범위

1.1 우진일렉트로나이트(주) 및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 계열사(이하 "헤라우스")의 모든 주문 (배송되는 재화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다음 일반구매약관("GTCP")이 적용된다. 이 일반구매약관은 헤라우스의 향후 주문에도 적용된다. 헤라우스는 사전에 서면으로 공급 업체의 일반 약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일반구매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공급자의 일반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다. 헤라우스가 공급 업체의 탈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일반 약관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품 배송을 수락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도 공급 업체의 일반 약관은 헤라우스와 공급자 간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계약의 제시 및 체결

2.1 모든 주문, 계약 및 그 수정은 헤라우스가 서면으로 체결 또는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헤라우스를 구속한다. 모든 소통은 헤라우스 구매팀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2.2 헤라우스의 주문에 주문 수락 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주문이 체결된 날로부터 십사(14)일 이내에 주문을 수락해야 한다.

2.3 주문 가격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재협상될 수 없다.

2.4 공급자의 주문 확인서와 헤라우스의 주문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급자가 헤라우스에 주문서 수정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헤라우스가 서면으로 그 권고에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검사 및 구매 의무

3.1 공급자는 그 일반적, 전문적 지식과 자체 계획의 기본틀 하에서 헤라우스가 제공하는 모든 도면, 계산, 규격, 기타 작업 기술서의 오류와 불일치를 확인한다. 오류나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공급자는 즉시 그 사실을 헤라우스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3.2 소유권이 공급자로부터 헤라우스로 이전된 이후를 포함하여, 대상물이 헤라우스의 소유가 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4. 배송; 유보; 담보

4.1 헤라우스가 주문서에 명시한 배송 기간 또는 서비스 제공 기간은 구속력을 가진다. 주문에 해당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문이 체결된 날로부터 십사(14)일 이내에 상품을 수령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2 공급자가 상기 4.1 항의 구속력을 가진 배송 또는 제공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그 사실을 즉시 헤라우스에 통지하고 새로운 배송 또는 제공 일자를 제안한다. 또한 공급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배송/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헤라우스에 통지할 의무를 지며, 공급자가 문제를 인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즉시 그렇게 해야 한다.

4.3 공급자는 헤라우스가 운송, 포워드, 선적에 관해 명시한 지시 및 요구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를 진다.

4.4 양측이 별도의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는 DDP 조건 "사용 현장 도착도"(Incoterms 2020)이 적용된다. 상품이 현장 배송되거나 제 3자에게 직접 배송된 경우, 하역 비용 및 위험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4.5 부분 배송은 헤라우스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헤라우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4.6 공급자는 모든 배송물에 정확한 정보(내용물, 단위 무게, 헤라우스 SAP 주문번호 등)가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동봉해야 한다.

4.7 헤라우스가 지연 배송 또는 제공을 이의 없이 수락했다고 해서 지연 배송 또는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헤라우스의 손해에 대한 헤라우스의 보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 규정은 헤라우스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금액을 전액 지불할 때까지 유효하다.

4.8 공급자가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헤라우스가 상품을 수령하면서 시행한 검사를 통해 확인한 수량, 크기, 무게 수치는 구속력을 가진다.

4.9 공급자는 헤라우스가 특혜세율 및 그 밖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서류, 특히 헤라우스가 이런 목적으로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한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4.10 지급 수단, 운송 서류, 원산지 증명서, 매출세 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한 경우, 헤라우스는 상품 수령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비용과 위험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4.11 설치 또는 부착을 공급자가 담당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리고 이에 반하는 서면 합의/조항이 없는 경우, 출장비 또는 고정비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4.12 공급자가 제공한 계약상 저당금, 그 밖의 담보 또는 유보금은 헤라우스와 공급자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서면 계약을 통해서만 집행된다.

4.13 공급자는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특히 AEO)와 같이 공급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조직적 지시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산 보호 분야에서 상업 관계 보안, 인사 및 정보, 포장 및 운송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급자는 헤라우스를 위해 배송되는 상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한 접근 및 조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상품 배송 또는 서비스 제공을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만 맡겨야 한다. 공급자는 그 도급업체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시를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4.14 공급자는 인도된 상품이 (i) 적용 가능한 한국 법률 및 규정 (예 : K-REACH) 또는 (ii) 국제 규칙, 표준 및 가이드 라인에 명시된대로 유해 화학 물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이 포함된 위험물로 분류되는 경우, 공급 업체는 주문이 확인 된 날짜까지 Heraeus 에 이를 알려야 한다.

4.15 헤라우스는 헤라우스가 생산 목적으로 공급자에게 제공한 물질, 도구, 자재, 기타 모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이런 물건은 가공되기 전까지 별도로 보관하고 그 신품가치를 기준으로 손실 및 파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는 헤라우스의 지시 하에서만 해당 물건을 가공, 혼합, 조합(추가 가공)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헤라우스에게 배송된 상품의 추가 가공에도 적용되며, 이는 헤라우스가 해당 (최종) 상품의 제조자 및 소유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16 구매 가격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의 소유권은 무조건 헤라우스에 귀속된다. 헤라우스가 예외적으로 상품의 소유권 이전이 상품 가액 지불을 조건으로 하는 제안에 동의한 경우, 공급자의 해당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 가격 지불 시까지로 연장되며, 그 이상으로 연장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재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 가격에 대한 권리를 공급자에게 유보하는 한, 헤라우스는 구매 가격을 지급하기 이전에도 정상적인 사업 활동 중에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소유권 단순 유보 기간의 재판매 시점까지로의 연장). 어떤 경우에도 공급자가 명시한 모든 다른 형태의 소유권 유보는 배제된다: 특히 명세서에 따른 소유권 유보 연장.

5. 불가항력

5.1 불가항력, 노동 쟁의, 헤라우스 측에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이 발생한 사업 중단, 전염병, 소요, 정부의 행위, 헤라우스의 통제를 벗어난 기타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고 3 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헤라우스의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경우, 헤라우스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에도 헤라우스가 가진 다른 권리 및 구제 수단은 침해되지 않는다.

6. 계약 상 손해 배상

6.1 공급자가 적시에 배송 또는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헤라우스는 공급자가 지연시킨 기간 일주일 당 총 주문 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총액은 주문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공급자의 의무 위반이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발생했으며, 공급자가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예방)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헤라우스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2 상기 6.1 항에 따른 계약상 손해 배상은 공급자가 적시에 배송 또는 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즉시 발생한다. 손해배상금 지불 의무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즉시 발생한다.

6.3 헤라우스는 공급자의 배송 또는 제공 의무에 대한 청구와 무관하게 배상금을 강제할 수 있다. 헤라우스가 공급자의 지연 의무 이행을 수락한 경우에도 헤라우스는 계약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품을 수령한 당시에 이런 권리가 명시적으로 헤라우스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하다. 헤라우스는 계약상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최대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 대금을 최종적으로 지불한 시점까지 유지된다.

6.4 헤라우스는 6.1 항에 따른 계약상 손해액을 상회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손해가 증명될 경우 증명된 손해액에 6.1 항에 따른 손해액이 더해진다.

7. 결함에 대한 면책; 제조물 책임; 보험

7.1 공급자는 공급되는 상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증된 가용성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특히, 공급자는 상품 및 서비스가 널리 통용되는 정부 기관 및 무역 기관의 기술, 보건, 안전 규칙 및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할 책임을 진다.

7.2 헤라우스는 그 상당한 주의 의무에 따라, 배송물이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할 의무를 진다: 헤라우스의 검사 의무는 상품에 대한 외부 육안 검사 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결함으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운송 서류, 수령 후 검사, 샘플링을 통한 품질 관리를 통해 나타난 결함(운송 중 발생한 제품 손상, 오배송, 불충분한 배송 등)도 포함된다. 이에 더해,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시행되는 시험의 타당성은 개별 사례 별로 달라질 수 있다. 헤라우스가 상품 수령을 수락한 경우에도 사후에 발견한 결함에 대해 통지할 수 있는 헤라우스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급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후 결함에 대해 헤라우스를 면책할 의무를 진다. 어떤 경우에도, 공급자가 십사(14)일 이내에 결함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결함 통지는 즉시 적시에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7.3 아래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집행 및 숨겨진 결함에 대한 배상에 관한 법률 조항 (대한민국 상법 69 조)이 적용된다.

7.4 계약 이행의 틀 안에서, 공급자가 결함 품목을 수리하거나 결함이 없는 제품으로 교환해준 경우, 해당 시점으로부터 의무 보증 기간이 개시된다.

7.5 공급자가 헤라우스가 결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헤라우스는 직접 의무 이행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거나 제 3 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헤라우스는 이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7.6 결함 상품 또는 결함이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 즉 출장 및 운송비, 인건비, 장비 비용, 수령 검사 비용, 특히 통상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결함 시점에 소요된 모든 비용(제거 및 설치 비용 포함)은 결과적으로 결함이 없었다고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공급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헤라우스는 헤라우스가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거나,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헤라우스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잘못된 결함 면책 청구에 대해 공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7.7 공급자는 제조물 책임, 공급자가 공급/제조한 물품/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청구로부터 헤라우스를 보호하고 면책할 의무를 진다. 제조물 책임 청구의 대상이 엄격한 의미로 헤라우스에 한정된, 상기 규정은 공급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급자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 제조물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또한 법률 비용, 물품 리콜 비용, 제품 시장 철수 비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비용 및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 헤라우스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의 범위와 금액을 공급자에게 알린다.

7.8 공급자는 충분한 보장 범위를 가진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할 의무를 지며, 헤라우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당 보험 가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헤라우스에 제공해야 한다.

7.9 계약 당사자들의 상호 간의 청구에는 관련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 결함에 대한 일반 청구 기간은 위험이 발생한 날 또는 수락이 필요한 경우 이전 수락이 있었던 날로부터 삼(3)년으로 한다.

7.10 대한민국 민법 제 742 조 및 744 조 2220 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만료된 기간에 대한 권리를 사후에 포기할 수 있다. 헤라우스는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해당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해당 의무에 대한 채권자의 소권이 만료된 이후를 포함하여 헤라우스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헤라우스는 비자발적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헤라우스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헤라우스는 어떠한 자연채무도 지지 않는다.

8. 제 3 자 재산권 침해

8.1 공급자는 공급자의 상품 공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어떠한 제 3 자의 특허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권도 침해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며, 헤라우스가 그 사실을 문서로 입증할 것을 요구할 경우, 제 3 자가 제 3 자의 특허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헤라우스에게 제기하는 모든 청구로부터 헤라우스를 면책하고 보호해야 한다. 공급자는 그런 제 3 자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경비를 헤라우스에 배상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헤라우스는 공급자의 동의 없이도 제 3 자와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합의를 체결할 권리, 특히 재판상 합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9. 가격 및 지불 기간

9.1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은 구속력을 가진다. 이 가격에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 가격 (부착, 설치 등), 추가 비용(포장, 운송, 책임 보험 등)이 포함된다. 헤라우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포장재를 회수한다.

9.2 모든 송장에는 헤라우스의 SAP 주문 번호, 정확한 상품/서비스 설명, 상품/서비스 수량, 단위 가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송장은 주문서에 명기된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9.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합의된 가격은 배송이 완전히 완료된 후 및/또는 서비스가 완전히 제공되었으며(수락 조건 부인 경우 수락 포함), 정확한 송장이 수령 날로부터 육십(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9.4 공급자가 서면 지불 요구서를 통해 헤라우스에게 대금 지급 지연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지급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는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는 상거래 연체 방지를 위한 2002 년 8 월 2 일 법률의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9.5 헤라우스는 타방 당사자의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청구 상계/ 손해배상, 상품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의무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특히, 헤라우스는 공급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기간 동안 모든 대금 지급을 중단할 권리를 가진다.

10. 산업재산권 및 노하우

10.1 헤라우스가 공급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한 모델, 샘플, 도면, 소프트웨어, 문서, 그 밖의 자료 그리고 모든 자재, 도구, 생산 및 시험 장비, 노하우에 대한 모든 소유권, 권리, 지분은 전적으로 헤라우스에게 있다. 해당 물품, 자료, 서류는 기밀로 취급해야 하며, 헤라우스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헤라우스의 그런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 대상 제 3자에게 동일한 기밀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10.2 공급자는 계약에 따른 모든 서비스를 완전히 제공했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헤라우스의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10.1 항에 따른 모든 물품, 자료, 서류를 헤라우스에 반환해야 한다. 해당 물품, 자료, 서류에 대한 그 밖의 다른 용도 또는 부적절한 방식의 사실적, 법적 사용 및/또는 그 밖의 직간접적 남용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10.3 기술적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시행한 연구, 개발, 건설, 기술, 그 밖의 계약 체결의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지분은 전적으로 헤라우스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출원할 수 있거나 이미 출원했거나, 취득한 모든 특허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최신에 속하지 않는 모든 새로운 기술적 노하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헤라우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근로자에 의한 의존적 발명 또는 무상인 경우 독립된 발명을 헤라우스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다. 해당 발명 취득에 따른 비용은 헤라우스가 부담한다. 공급자는 그런 새로운 기술적 노하우 또는 발명에 대해 육(6) 주 이내에 헤라우스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약속한다.

11. 헤라우스 행위규범 및 공급자 품질 매뉴얼

11.1 헤라우스는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그 평판과 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공급자는 모든 법령 및 규칙, 특히 공정 경쟁 보호를 위한 모든 관련 법령, 모든 관련 수출입 금지 규칙, 모든 관련 관세 및 세금 법령을 준수하고, 제품 구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대를 목적으로 하는 헤라우스의 직원들에 대한 헤택 제안, 약속, 제공(매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자체 인력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적절한 근무 시간을 보장하고, 그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것을 헤라우스에 약속한다. 또한 공급자는 "공급자 품질 매뉴얼(Supplier Quality Manual)"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며, 해당 매뉴얼의 내용이 본 약관 및 향후 헤라우스와 공급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최신 공급자 품질 매뉴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heraeus.com/en/hen/about_heraeus_hen/supplier_quality/supplier_quality.html.

11.2 공급자가 상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헤라우스는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매수 행위 또는 공정 경쟁 보호 규칙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헤라우스에 주문 금액의 10%를 위약금/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또한 공급자는 공급자의 상기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청구로부터 헤라우스를 면책한다.

12. 분리성

12.1 본 GTCP의 각 조항은 해당 법률에 따라 효과적이고 유효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약관의 하나 이상의 조항이 법률 변경 또는 기타 이유로 무효로 선언되거나 시행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다른 조항의 적법성, 유효성 및 일반 약관의 관련 조항과 일반 약관 전체의 시행 가능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eraeus 와 고객은 법적으로 가능한 한 일반 약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항으로 무효 조항을 교체할 것이다.

13. 기타 조항

13.1 헤라우스와 공급자 간의 모든 대금 지급은 헤라우스 등록 사무실에서 이뤄진다.

13.2 본 구매약관 및 헤라우스와 공급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 단, 명시적으로 배제된 국제 사법 조항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는 제외한다.

13.3 지역 관할지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단, 헤라우스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각각의 법적 조치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모든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